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SKKUIACUC: Sungkyunkwan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과 사후처리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하여, 간사와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학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당해 심의안전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이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조사를 시행하거나 담당부서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매년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 및 평가) ① 본교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동물실험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실험계획 심의·평가에서 다음 각 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전에 대하여는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평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한다.

⑤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전에 대한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후 조치) ①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이 종료하면 연구자는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계획에 따라 실험이 시행되었는지 최종 점검한다.

④ 동물실험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실험이 종료된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비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및 조치) ① 위원회는 교내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시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 약 서

성 명			직 위	
소 속				
주 소	사무실			
	자택			
연 락 처	전화번호(사)		이동전화	
	E-mail		FAX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위 본인은 성균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직(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재직기간 및 이후에도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성균관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동물실험계획서

접수번호						
과제명						
지원기관	사업명			연구비		
실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총 일/주/개월)	
과제구분	신규 ()		계속 (구계획서 승인번호)			
과제책임자	성명	직급	소속	연락처	비상연락처	동물실험윤리교육 이수번호
실험수행자 (*계획서 제출자 이름 굵게 표기)	성명	직급	소속	연락처	비상연락처	동물실험윤리교육 이수번호
	⋮	⋮	⋮	⋮	⋮	

*실제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등)의 정보 반드시 기입, 수행하는 연구원 변경 시 반드시 통보

1. 연구 및 실험 개요

연구목적과 예상성과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용,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학문적 및 경제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동물실험 등급	등급A ()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B ()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등급C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D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는 경우				
	등급E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물실험 필요근거	살아있는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해당함
	1. 실험과정상 <i>in vitro</i> 실험이 불가능하다 2. 대체수단의 이용에 관한 연구결과나 정보가 불충분하다 3. 사람이나 실험동물에 적용하기 전에 필요한(안전성 혹은 유효성) 시험이다 4. 동일한 내용의 실험 결과가 없다 5. 현재까지 알려진 최선의 실험/교육방법이다 6. 실험동물의 행동학적 혹은 생태학적 관찰이 필요하다 7. 기타 사유 :					() () () () () ()
동물종류 및 계통 선택사유	내용 :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1. 생물학적, 해부학적, 시험물질에 대한 감수성 등의 면에서 해당 동물종류(계통)이 필요하다 2. 해당 동물종류(계통)은 위 연구와 관련하여 질환 혹은 연구모델로 쓰이고 있다 3. 기존 연구과제 수행에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동물종류(계통)이다 4. 연구과제나 실험 수행을 위한 목적 실험동물이다 5. 기타 사유					() () () ()
사용할 실험동물의 수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합 계	
	동물종류 수	동물종류.계통수				
	총실험동물수					
	(실험동물 사용근거)					
(각 실험군의 수, 통계적 처리내용 설명)						

2. 실험동물 관련 세부사항(사용 종류별로 별도 사용)

동물종류		계통		성별	
실험동물 구입처	업 체 명 : 자가유지 :	품질구분	무균동물 () SPF동물 () 노트바이오트 () 일반동물 ()		
모니터링 (자료제출)	없음 있음 업체제공자료 () 실험자평가자료 ()				
사용시설	1. () 2. ()				
	(특별히 필요한 사육관리 혹은 동물실험 환경)				
동물실험 절차	1. 실험동물 순화 혹은 행동관찰 2. 실험동물의 보정방법 3. 투여방법(횟수를 포함) 4. 시료채취방법(채혈부위와 양 포함) 5. 외과적 처치내용			프로토콜 첨부	
실험동물의 인도적 처리기준	실험 중 실험동물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실험을 중단해야 할 경우의 판단기준이나 문헌제시				
실험 중/종료 시 실험동물 의 고통관리	진정제 혹은 마취제 용량 등 1. 마취제/진정제 투여(약물명: 용량 :) 2. 가스법 (가스명 및 농도) 3. 기타(방법 :)				
실험 중 실험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	1. 사료 급여 및 급수의 제한 여부 2. 경미, 일시적인 고통 혹은 고통과 스트레스 없음 3. 진정제, 혹은 마취제의 투여 등으로 해소될 수 있는 고통 혹은 스트레스 4. 장시간 신체적 행동이 속박됨 5. 고통이 있으나 고통배제가 불가능한 실험 6. 기타			() () () () () ()	
	(고통경감이 불가능한 이유)				
실험동물 사체 처리	1. 소각 2. 기타(방법 :)				

3. 실험물질

물질명 (병원체포함)	
사용량 투여경로 사용물질	(부형제 등)
실험물질이 환경노출 시 미칠 수 있는 영향	
실험물질이 실험동물에게 주는 영향	
적용하여야 할 소독제 (필요한 경우)	

4. 기타사항

실험을 위하여 시설 내 반입하여야할 물품/장비	() 있으면 √표시 후 장비명과 목적, 기간 등에 관하여 기술.
기타 실험수행을 위한 특이사항	

붙임 : 1. (목록)

2.

※ 동물실험계획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동물실험연구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서약서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1.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겠습니다.
3. 과제책임자로서 등록된 실험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승인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겠습니다.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위원회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인)

신 청 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접수번호	SKKUIACUC		평가차수	
기승인번호	SKKUIACUC	동일연구과제로 승인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평가일	
연번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승인여부 승인: ○ 불승인: ×	평가의견
1	동물실험 필요근거	· 연구과제의 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동물실험이 필수적이며 타당한가 · 동물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학문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동물을 희생하는 것보다 월등히 큰가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가능성	· 해당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방법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동일한 실험물질에 대하여 실험한 정보의 중복여부를 검색하였는가		
3	동물실험 절차 및 동물관리	· 동물실험절차 및 실험기간이 과학적이고 적절한가 · 동물실험과 동물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그 기준이 적정하고,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이 고려되었는가 · 장기실험 등에서의 동물의 엔리치먼트를 고려하였는가		
4	동물종류 및 계통 선택사유	· 동물실험 수행에 있어 선택한 동물종류 및 계통의 선택이 적절한가		
5	동물수의 적정성	· 연구과제의 목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계획한 동물의 총 수와 해당 동물실험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 실험군별 동물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6	동물의 인도적 처리기준	· 동물실험 중 실험동물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실험을 중단해야 할 경우, 그 판단기준이나 문헌이 제시되었는가 · 동물의 수의학적 처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가 · 동물의 안락사 방법과 용량 등이 해당 동물종류와 계통에 적절한가		
7	실험 중/ 종료 시 동물의 고통 감소방안	· 동물의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 그 감소를 위하여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을 고려하였는가 ·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량, 방법 및 종류가 해당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종류 및 계통에 적절한가		
8	실험 중 실험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 정도	· 동물에 사료급여나 급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적절하며 동물의 생리적 한계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인가 · 장시간 동물의 신체적 행동을 속박하는 경우 그 과학적 사유가 분명하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소의 시간을 배정하였는가 · 동물실험의 모든 과정에서 실험동물이 받을 고통에 대한 분류가 적절한가		
9	실험물질이 동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실험동물이 실험물질로 인하여 동물실험 전후에 받을 수 있는 부작용과 역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실험물질과 실험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등이 인간의 안전과 동물실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고려하였는가		
10	기타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정도가 적절한가 · 동물실험 중 외과적 처치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실시자가 전문적이며 훈련의 숙련도가 적절한가		

종합 심의평가 결과		종합 평가의견 및 수정 보완해야할 사항	
원안승인			
수정후 승인			
수정후 재심			
불승인			

위원 : (인)

※ 종합 심의평가 결과

- ①평가항목 모두 승인일 경우 원안승인
- ②평가항목 불승인 항목에 대해 간단한 수정이 가능한 경우 수정 후 승인
- ③평가항목 불승인 항목에 대해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경우 수정 후 재심의
- ④평가항목 불승인 항목에 대해 수정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불승인

<별지 제4호 서식>



성균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승인번호.			
책임연구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접수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심의종류	☐ 정규심의 ☐ 신속심의 ☐ 긴급심의		
심의일자			
심의결과	☐ 원안승인 ☐ 수정 후 승인 ☐ 수정 후 재심 ☐ 불승인		
승인일자		승인가간	
중간보고	☐ 3개월 ☐ 6개월 ☐ 1년 ☐ 기타()		
심의의견			
성균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성균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승인번호				
과제명 (한글/영문)									
지원기관		사업명			연구비				
실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총 일/주/개월)							
과제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실험 변경 사유		실험연장 혹은 변경 사유 기술							
변경 내용	실험자 변동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내용								